|  |  |  |
| --- | --- | --- |
|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와** **관련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12] 제58호국가 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이나 외환관리부, 심천시 ․ 대련시 ․ 청도시 ․ 하문시 ․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외국인 직접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 대한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1. 이 통지에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라 함은 둘 이상 외국기업이나 개인(이하󰡒외국 합명인󰡓이라 함)이 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합명기업이나 외국 합명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과 합법적으로 설립한 합명기업을 말한다. 2. 국가 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외환국󰡓이라 함)에서 책임지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외환등록, 외환수지 및 외환자금의 환어음 등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별첨 참조)(2) 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코드(원본을 확인하고 복사본을 남김)(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록사항 일괄을 포함한, 등록기관의 확인인장을 날인한 기업 기본정보나 인터넷 조회결과를 프린트한 자료(이하 정보자료라 함)정보자료에 합명인의 출자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명인 전원의 확인을 받은, 각 합명인의 출자하기로 하였거나 실지 납입한 출자학인서(다 지역 간 인민폐형태로 출자한 경우에는 인민폐 출자액을 명기해야 함)(4)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지사는 별도로 외환등록을 하지 않는다. 4. 신규 외국 합명인이 합명에 가입하거나 원 합명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여 합명에 가입함으로써 원 합명기업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이 통지 제3조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5.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수속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외환국에서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이나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2) 영업허가증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한 후의 영업허가증(원본을 확인하고 카피 본을 남김)(3) 정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정보내용서합명인의 증가나 감소로 외국투자 합명기업의 출자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정보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합명합의서에서 지정된 합명인이 서명한, 당해 합명인이 불입하기로 하였거나 실지 불입한 출자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6. 외국투자 합명기업을 해산하고 청산을 필한 후 청산인은 기업의 공상등록 말소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환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와 외환등록 증빙자료 (2)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청산보고서(3)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7. 외국 합명인이 외화로 출자금을 불입한 경우 외국투자 합명기업에서 외환등록을 필한 후 외환 등록증빙을 지참하고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서 외국투자 합명기업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당해 구좌는 외국투자기업 외환 자본금구좌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환등록을 하기 전에 외국 합명인이 외환출자금을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 신청하여 외국투자자 선불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8.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 대한 외국 합명인의 출자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국측 출자확인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 출자 자금사정 자문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측 출자확인 수속을 필하지 못한 경우 외국합명인의 자금은 국내에서 이체하거나 결제 사용하지 못한다.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이 청산, 자금축감, 합명자산의 지분양도, 이윤배당 등으로 취득한 소득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합명인 출자 확인등록을 완성한 후에만 국외 송금이나 국내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9.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에게 그 이윤소득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은행에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2)《합명기업법》의 규정과 합명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윤배분방식에 따른 합명인 전원의 이윤배분 의결서(3) 외국합명인 소득이윤 세무증명서(4)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이윤송금 수속을 하기 전에 외국 측 출자확인 등록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이윤상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이윤 송금수속을 해주는 동시에 관련정보를 외환국 업무계통에 등록해야 한다.10. 외국 합명인(그의 합법적 승계인 포함)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취득한 이윤 또는 퇴출소득, 청산소득 자금, 합명재산의 지분양도 소득을 중국경내에 투자(증자나 재투자 포함)하는 경우 하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소재지 외환국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였거나 사무집행 합명인 또는 지정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2) 상기한 소득 자금의 출처 증명자료와 그 세무증명서(3) 재투자 프로젝트의 영업허가증, 회사정관 (또는 합명합의서)(4) 재투자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인가서류, 인가증명서, 외환등록 증명서(5) 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11.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경내 합명인이 외국 합명인의 자산 유가약인지분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경내 합명인이 합명기업 소재지 외환국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 후에 관련 세무증명서와 외환등록정보를 지참하고 경내 합명인 소재지 은행에서 구입, 송금 수속을 해야 한다.12. 외국 합명인이 경내 합명인의 출자액을 양수하여 합명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소재지 외환국을 통해 외환등록 변경수속을 하고 원 경내 합명인이 외환 등록정보에 근거하여 직접 은행에 환금전용 외환구좌를 개설하여 외국 합명인이 지불한 유가약인에 사용해야 한다. 당해구좌의 외환자금 환 결제는 현행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다. 13.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 외국 합명인에게 그의 탈퇴자금이나 청산 소득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서 관련 외환등록 변경수속이나 말소수속을 한 후 관련 세무증명서와 외환 등록정보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송금수속을 해야 한다. 14.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나 그 합명인에 대한 외환국의 관리업무는 외환국의 관련 업무계통에서 취급해야 한다.은행의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자본계정 개설, 자금 불입, 환 결제, 계정폐쇄 등 업무는 업무 취급당일 외환국 관련 업무계통을 통하여 즉시,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정보를 비치하거나 피드백 해야 한다. 외국 합명인 및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관련 국외수지 시에는 수지 통계 신고와 관련한 국제규정에 따라 국제 수지 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15.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서는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을 참조하여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통지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관리사항은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련 외환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16.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나 은행에서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7.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지에 설립한 합명기업에 대해서는 이 통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8. 외국 합명인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외국의투자 합명기업의 여타 외환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 이 통지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에서는 이 통지를 입수한 후 즉시 관할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이첩하고 각 중국자본 은행에서는 즉시 관할 분지기구에 이첩해야 한다. 별첨: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외환등록 신청서(생략)국가외환관리국2012년 12월 19일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58号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促进外商直接投资便利化，规范和完善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法律法规，现就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管理有关问题通知如下： 一、本通知所称外商投资合伙企业是指2个以上外国企业或者个人（以下简称“外国合伙人”）依法在中国境内设立的合伙企业，以及外国合伙人与中国的自然人、法人和其他组织依法在中国境内设立的合伙企业。 二、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依法负责对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登记、外汇收支及资金汇兑等行为实施监督管理。 三、外商投资合伙企业应在领取企业登记机关颁发的营业执照后30日内，持以下材料向所在地外汇局申请办理外汇登记： （一）经全体合伙人签署或者执行事务合伙人或指定代表签署的《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登记申请表》（见附件）； （二）营业执照和组织机构代码证（验原件留复印件）； （三）包括外商投资合伙企业全部登记事项在内的加盖登记机关查询章的企业基本信息单或网络查询结果打印单（以下简称信息单）； 信息单中未显示合伙人出资情况的，还应当提交全体合伙人对各合伙人认缴或者实际缴付出资的确认书（以跨境人民币形式出资的，应注明人民币出资金额）； （四）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外商投资合伙企业的分支机构不需另行办理外汇登记。 四、外国合伙人新入伙，或者通过受让原合伙人在合伙企业中的部分或者全部财产份额入伙，致使原合伙企业变为外商投资合伙企业的，应参照本通知第三条相关规定办理外汇登记。 五、外商投资合伙企业在企业登记机关的登记事项发生变更的，应自向企业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之日起30日内，持以下材料向所在地外汇局申请办理外汇登记变更： （一）经全体合伙人签署或者执行事务合伙人或指定代表签署的《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登记申请表》（见附件）； （二）涉及营业执照变更的，提交变更后的营业执照（验原件留复印件）； （三）涉及信息单变更的，提交变更后的信息单； 合伙人增加或者减少对外商投资合伙企业出资且信息单中未显示出资变更情况的，还应当提交全体合伙人签署的或者合伙协议指定的人员签署的对该合伙人认缴或者实际缴付出资的确认书； （四）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六、外商投资合伙企业解散并清算完毕后，清算人应在办理企业工商登记注销手续后30日内，持以下材料向所在地外汇局申请办理外汇登记注销手续： （一）经全体合伙人签署或者执行事务合伙人或指定代表签署的书面申请及外汇登记凭证； （二）全体合伙人签署的清算报告； （三）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七、外国合伙人以外汇认缴出资的，外商投资合伙企业在办理外汇登记后，应持外汇登记凭证在外汇指定银行（以下简称银行）开立一个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账户。该账户参照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账户管理。 在外商投资合伙企业办理外汇登记前，外国合伙人确有需要汇入外汇出资的，可向外汇局申请开立一个外国投资者前期费用账户。 八、外国合伙人对外商投资合伙企业出资，应由外商投资合伙企业在所在地外汇局办理外方出资确认登记手续，登记所需材料参照外商投资企业外国投资者出资验资询证要求提供。 外商投资合伙企业未完整办理外方出资确认登记的，外国合伙人投入的资金不得在境内划转或结汇使用。 外国合伙人从外商投资合伙企业中因清算、减资、合伙财产份额转让、利润分配等所得，应在外商投资合伙企业完整办理外国合伙人出资确认登记后，才可用于对外付汇及境内再投资。 九、外商投资合伙企业向外国合伙人汇出其所得利润，应持以下材料向银行申请办理： （一）经全体合伙人签署或者执行事务合伙人或指定代表签署的书面申请； （二）全体合伙人按照《合伙企业法》规定形式及合伙协议约定的利润分配方式作出的利润分配决议； （三）外国合伙人所得利润的税务证明； （四）银行要求的其他材料。 银行在为外商投资合伙企业办理利润汇出前，应确认其已完成相应的外方出资确认登记手续，并查询和审核有关利润情况。 银行应在为外商投资合伙企业办理利润汇出的同时，向外汇局相关业务系统备案相关信息。 十、外国合伙人（含其合法继承人）以从外商投资合伙企业获得的利润或退伙、清算所得资金和转让合伙财产份额所得资金用于中国境内投资（包括增资或再投资）的，应持以下材料到外商投资合伙企业所在地外汇局办理登记： （一）经全体合伙人签署或者执行事务合伙人或指定代表签署的书面申请； （二）上述对应所得资金的来源证明材料及相应税务证明； （三）再投资项目的营业执照、公司章程（或合伙协议书）； （四）如再投资项目为外商投资企业，还应提供该企业的批文、批准证书、外汇登记凭证； （五）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十一、外商投资合伙企业的境内合伙人汇出受让外国合伙人财产份额对价款，境内合伙人应在合伙企业所在地外汇局办理登记变更后，凭相应税务证明和外汇登记信息，到境内合伙人所在地银行办理购付汇手续。 十二、外国合伙人受让境内合伙人的出资额入伙的，外商投资合伙企业应在所在地外汇局办理外汇登记变更手续，原境内合伙人根据外汇登记信息直接到银行开立境内资产变现专用外汇账户，用于接收外国合伙人支付的对价。该账户内外汇资金结汇按照现行外汇管理有关规定办理。 十三、外商投资合伙企业向外国合伙人汇出其退伙资金或者清算所得资金，应在所在地外汇局办理相应外汇登记变更或注销后，凭相应税务证明和外汇登记信息，到银行办理购付汇手续。 十四、外汇局为外商投资合伙企业或其合伙人办理外汇管理业务，应当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办理。 银行为外商投资合伙企业开立资本项目账户、办理资金入账、结售汇、关闭账户等业务时，应在业务办理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及时、准确地办理备案或信息反馈。 外国合伙人及外商投资合伙企业的相关涉外收支，应当按照国际收支统计申报的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 十五、外商投资合伙企业应参照普通外商投资企业参加外汇年检。 本通知未明确的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管理事项，参照普通外商投资企业外汇管理相关规定办理。 十六、外商投资合伙企业、银行未按本通知规定办理外汇业务，外汇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规定予以处罚。 十七、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企业或者个人在内地设立合伙企业，参照本通知规定执行。 十八、外国合伙人在中国境内设立的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合伙企业的其他外汇管理问题另行规定。 本通知自2012年12月17日起实施。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各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外资银行、农村合作银行；各中资银行应及时转发所辖分支机构。附件：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登记申请表（略） 国家外汇管理局 2012年11月19日 |